

2023년도 「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」 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 등 『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(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)』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3월 6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혹서기 폭염재해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
2. 지원규모: 100억원 내외

☞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

3.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(건설업 제외,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)

※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(90515)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
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3]

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□ 참여제한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·건축건설업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- ▶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▶ '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투자혁신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4. 지원내용

○ 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(신품에 한함)

○ (지원한도)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, 부가세 미지원)

※ 단,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(고위험개선 사업 포함)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☞ 지원내역 조회방법: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 과거지원내역 확인

○ (지원기준)

품목명	지원기준		비고
	건설업본사	제조업 등	
이동식 에어컨	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% 이내 지원 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(손망실·도난 방지)	상시근로자수*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** 초과 지원 불가 ※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※ '20~'22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	· 전·후 온도측정 불필요 · 사후기술지도 1~3년 ·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
그늘막	 현장과 작업거리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·지원 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(손망실·도난 방지)	지원 불가 ※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	· 사후기술지도 제외 (소모품)

*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(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)로 판단

가.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
나.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

****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**

○ (가격기준)

- (이동식 에어컨)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*	최대지원한도 (표준가격×0.7)
냉방능력		~3,000kcal/h (3,489W)	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(원가계산서 등)	
	3,000kcal/h (3,489W)	4,000kcal/h (4,652W)	1,138천 원	796천 원
	4,000kcal/h (4,652W)	5,000kcal/h (5,815W)	1,228천 원	859천 원
	5,000kcal/h (5,815W)	6,000kcal/h (6,978W)	1,488천 원	1,041천 원
	6,000kcal/h (6,978W)	7,000kcal/h (8,140W)	1,713천 원	1,199천 원
	7,000kcal/h (8,140W)	8,000kcal/h (9,304W)	2,012천 원	1,408천 원
	8,000kcal/h (9,304W)	9,000kcal/h (10,465W)	2,052천 원	1,436천 원
	9,000kcal/h ~ (10,465W)		2,559천 원	1,791천 원

* 냉방능력 3,000kcal/h(3,489W)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

*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, 제품의 소재, 성능,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- (그늘막)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*	최대지원한도 (표준가격×0.7)
면적 (=그늘막 가로×세로)		~5㎡	234천 원	163천 원
	5㎡	10㎡	256천 원	179천 원
	10㎡	15㎡	300천 원	210천 원
	15㎡	20㎡	320천 원	224천 원

* 측면 그늘막, 벨크로테이프, 염색 여부,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

- (지원제품) 성능·사양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(제작·판매업체)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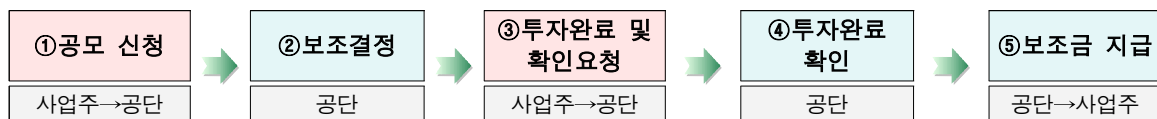
*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통(용량) 등), 열풍 배기방법 등

<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>

- ▶ 공급업체란 지원품목을 단순 제작·판매·공사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.
☞ 안전보건공단은 공급업체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안전보건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,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
☞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.
- ▶ 다만, 안전보건공단은 제품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공급업체에 대한 단순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(등재된 공급업체는 공단에 기본정보 제공을 희망한 업체임)
☞ 온라인 구매 등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(설비)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▶ 사업장-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(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, A/S 기간·절차협의 등)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☞ 사업장-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5.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

[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]



가. 공모신청

- (신청기간) '23. 3. 13.(월) 14:00 ~ 3. 31.(금) 14:00
- (신청방법)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 - ☞ 온라인 신청 매뉴얼: clean.kosha.or.kr > 알림마당 > 서식모임 및 자료실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공급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

○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구 분	비고
① 견적서 1부	
②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-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	
③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(현장 사진, 공단 기술보고서 등)	
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⑤ 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- (건설업 본사) 도급계약서 사본(제조업 등)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	
⑥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	필요 시

※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※ ⑥의 가격결정 근거자료*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[첨부2]

* 가격결정 근거자료: 원가계산서,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) 등

나. 보조지원 결정

○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 [첨부1]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

☞ 폭염재난 예방품목 외 고위험개선 품목 신청 시 가중치 부여[첨부2]

-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

○ 지원결정 결과는 4월말(예정)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☞ 로그인 > 사업신청 내역 >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“결정통보“

다.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

○ (시설개선)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

○ (확인요청)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구 분	비 고				
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					
②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오프라인 구매 시</th><th>온라인 구매 시</th></tr> <tr> <td>(제 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</td><td>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</td></tr> </table>	오프라인 구매 시	온라인 구매 시	(제 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	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	
오프라인 구매 시	온라인 구매 시				
(제 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	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 수량, 금액, 결제방법				
②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*					
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				
④ 지급보증보험 증권					
⑤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					

<지급보증보험 증권>

- ▶ 계약기간은 “(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날짜~’23.12.31.)+사후관리기간(4년)으로 적용
·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
- ▶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로 함
- ▶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: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

<입금 증빙서류>

(오프라인 구매시)

- ① (무통장입금): 이체확인증*+전자세금계산서+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
*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
-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텍스))
*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-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 + 신용카드복사본*
·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·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·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
라. 투자완료 확인

○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* 여부를 확인

* 기재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,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

마. 보조금 지급

-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~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

☞ 보조금 지급일정은 「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> 공지사항 >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

6. 기타사항

- 문의처: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☞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
-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,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

<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(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) 부정수급 금지 >

-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·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-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 -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

첨부 1

'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**최우선선정**

① '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, ③ 조선업종(226**)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최대 70점	
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- 근로자수 4인 미만 10점, 4~6인 미만 5점, 5~9명 3점	최대 10점	'23.3월 공식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
② 폭염재난 예방설비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③ 폭염재난 취약 사업장* * 건설업종[90515], 농업[800**], 어업[700**], 택배·운수업 [운수부대서비스업(50005), 항만내의육상하역업(50008), 육상 화물취급업(50010), 각종운수부대사업(50011), 화물운수업·택 배업·퀵서비스업(50105~50111)]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(90102)	10점	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업종
④ “고열”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	10점	'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
⑤ 폭염 예방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설비 추가 신청사업장 - 화재·폭발 예방설비(고정 설치품에 한함) 20점 - 이외 추가 사고사망 예방설비(품목코드)별 5점	최대 30점	폭염예방설비와 동시 고위험개선 신청품목에 한함 [첨부2]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최대 30점	
⑥ KOSHA-MS 인증 사업장	15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⑦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- 인정 10점, '22년 컨설팅 실시사업장(인정사업장 제외) 5점	10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⑧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- '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포함	5점	
계	100점	

※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(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)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

※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

첨부 2

폭염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설비(우선선정 접수 부여 가능 품목)

■ : 기준가격 품목(가격결정 근거자료 생략가능) ■ : 기준가격 이외 품목(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)

		
①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<전후방카메라, 감지센서, 캐빈>	② 화재·폭발 예방 설비(고정식에 한함) <유해가스모니터링, 경보장치 등>	③ 고소작업대 * 안전인증품 한정
		
④ 원료공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<프레스, 전단기>	⑤ 프레스·전단기 안전장치 <광전식 양조작식 재동방지장치 등>	⑥ 프레스·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* 클램프 능력, 타입에 따른 차등
		
⑦ 질식재해 예방설비 <호흡용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환기설비>	⑧ 천장크레인(3톤 미만) 교체 * 09년 이전설치 및 설비구조불량에 한함	⑨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호장치 <안전바, 안전봉(코너설치형)>
		
⑩ 소음방지시설 *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	⑪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방호장치 <권과·전복·과부하방지장치>	⑫ 크레인 안전장치 <비상정지장치, 무선원격제어기 등>
		
⑬ 추락방지시설 <안전난간 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 사다리 등>	⑭ 끼임방지 시설 <방호덮개 롤러가이드베이어 안전장치 등>	⑮ 건설기계(굴착기, 로더) 충돌예방설비 <후방카메라, 인체감지센서>
		
⑯ 리프트·승강기 안전장치 <방호울, 과부하방지장치 등>	⑰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* 3톤 미만 무인식 한정	⑱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<취출로봇(자율안전확인), 호퍼로더>
		
⑲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<방호울, 라이트커튼, 안전매트 등>	⑳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설비 <후방카메라, 인체감지센서>	㉑ 건설기계(굴착기) 안전장치 <자동안전쿼커플러, AVI일체형>
		
㉒ 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* 10개 이상, 100L, 200L 용량	㉓ 식품가공용기계 교체 * 자율안전확인신고품 한정, 기존품 폐기	㉔ 고위험작업 대체설비(자동화설비)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

Q. 중소기업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어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

- ☎ 문의

- 일반상담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**국번없이 1357**
- 온라인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: **02-3215-2674**

[별지 제3호 제식]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발급번호 : 0000 - 0000 - 00000

중소기업 확인서

① [중기업 / 소기업 / 소기업(소상공인)]

기업명 : _____

사업자등록번호 : _____

대표자명 : _____

주소(본점) : _____

② 유효기간 : 0000. 00. 00. ~ 0000. 00. 00.

용도 : 공공기관 입찰용,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

■ 확인서 신청지점

사업자등록번호 : _____

주소 : _____

본 기업은 「중소기업확인서」 제3호 또는 「소상공인확인서」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③

※ 주의사항

- 「중소기업확인서」 제3호 또는 「소상공인확인서」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한 기업은 「중소기업확인서」 제3호 또는 「소상공인확인서」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발급받은 「중소기업확인서」 또는 「소상공인확인서」를 「중소기업확인서」 또는 「소상공인확인서」를 통해 확인 가능.
-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행,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.
- 기업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「중소기업확인서」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「중소기업확인서」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■ 확인사항중

-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(중기업 지원불가)

- 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

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
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일선기관명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	02-6711-2898
강원지역본부	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	033-815-1090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	02-6924-8739
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	02-2086-8026
강원동부지사	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	033-820-2572
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681
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	052-226-0526
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	055-269-0546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	055-371-7553
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	062-949-8764
전북지역본부	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	063-240-8535
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	061-288-8735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16
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	063-460-3625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	061-689-4951
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	053-609-0563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	053-650-6834
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	054-478-8025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	054-271-2046
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0-523
경기지역본부	경기도(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	031-259-7113
경기북부지사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	031-828-1932
고양파주지사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	031-540-3845
경기중부지사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	032-680-6538
경기서부지사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	031-481-7514
경기동부지사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	031-785-3342
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	042-620-5653
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	043-230-7125
충북북부지사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	043-849-1044
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보령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	041-570-3439